

## [ ] 훈련비 지급 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

### [ ] 훈련수당

사업주 (훈련기관)	사업주(기관)명		
	소재지	□□□-□□□□ (전화번호: )	담당자: )

훈련생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	

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

② 반환명령금액

③ 추가징수금액

④ 납부할금액(②+③)

⑤ 반환·징수결정사유

귀하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금액은 「고용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#### 안내사항

-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    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  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  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      접수     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  
우편번호      주소      / 홈페이지 주소  
전화번호 ( )      FAX번호( )      /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